

아 파 트 분 양 권 매 매 계 약 서

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

1.아파트분양권의 표시

소 재 지						
토 지	지 목		대 지 권		면 적	㎡
건 물	분양면적	㎡	읍 선	%	전용면적	㎡

2.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 내역

분 양 금 액	금	원정(W	)
납부한 금액	금	원정(W	)
납부할 금액	금	원정(W	)

3. 계약내용

제1조) 위 아파트분양권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

매매대금	금	원정(W	)
계 약 금	금	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.	영수자(①)
중 도 금	금	원정은	년 월 일에 지불하며
	금	원정은	년 월 일에 지불한다.
잔 금	금	원정은	년 월 일에 지불한다.

제2조) 매도인은 위 아파트분양권 매매 잔금 지불과 동시에 분양계약서, 당첨권, 전매동의서, 영수증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증명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조)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(중도금이 없으면 잔금)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4조)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5조) 지정된 납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이자 등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것은 매도인이, 그 이후 것은 매수인이 부담하되, 잔금지불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지체 동안의 이자부담은 지체의 책임이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부담하기로 한다.

제6조)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 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또한,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,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.

특약사항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·날인 후 매도인,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 장마다 간인 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매 도 인	주 소							인
	주민등록번호			전 화		성 명		
	대 리 인	주 소		주민등록번호		성 명		
매 수 인	주 소							인
	주민등록번호			전 화		성 명		
	대 리 인	주 소		주민등록번호		성 명		
중 개 업 자	사무소소재지			사무소소재지				인
	사 무 소 명 칭			사무소명칭				
	대 표	서명·날인	인	서명·날인				
	등 록 번 호		전화		등록번호		전 화	